

2022  
6. 27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KRIHS POLICY BRIEF  
No. 871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http://www.krihs.re.kr)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 주요 내용

- ① 주거위기는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주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주거취약으로 가시화되기 전의 상태로 정의
- ② 직업+가구특성+점유형태+보증금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주거위기가구는 25.9~51.2만 가구이며, 전기·가스·수도 등 기초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가구는 29.0~40.6만 가구로 추정
- ③ 주거위기가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대응, 상시지원, 탈출 및 회복지원 등 다층적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긴급주거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긴급임시주택, 주거복지센터 연계 등이 필요
- ④ 해외에서도 임차가구 긴급지원, 위기가구 실태조사,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주택 투자 확대, 긴급주택 공급, 상담 확대, 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방식으로 위기가구를 지원

### 정책제안

- ① 긴급-상시-회복과 서비스를 연계한 종종의 주거안전망체계 구축 필요
- ② 위기가구 규모(25.9~51.2만 가구)에 비해 실직은 13~26%(6~7만 가구)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책 확대가 필요
- ③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대상자의 선정조건을 확대하여 임대료 연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순수월세가구, 공동주택 이외 주택 관리비 연체 현황 파악 등의 개선 필요
- ④ 주거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위험에 처한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적·예방적 지원 확대
- ⑤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300~800억 원 수준의 정부재원을 지원하여 위기가구 상담과 서비스 연계 필요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조정희 부연구위원  
허소영 전 연구원

## 1

## 주거위기와 정책대상

## 주거위기기구 정의와 진단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나 경기 침체, 재택근무 도입, 대중이용시설 제한 등을 주거 측면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주거위기기구 발생

기존의 주거지원은 주거문제가 상당히 진행되어 취약함이 증명된 가구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특정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레 발생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에는 제약이 존재

- 현재 소득이 있고 주거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았더라도 외부 충격에 대응할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가구(불안정 직업 종사, 저소득 임차가구 등)는 잠재적 위험군이 될 수 있으나 공적 지원제도에 편입되기에 어려운 상황
- 국내 주거정책 대상을 정의하는 방식이 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미 주거취약 상태의 대상자를 개별 추가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위기에 몰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초래된 주거부문의 위기가구와 정책대상을 위기-취약-상실의 흐름 속에 새롭게 정의하고 정책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계 재구조화(취약가구 중심 ⇒ 긴급-회복-서비스 연계-상시체계)를 제안

## 위기와 취약 및 주거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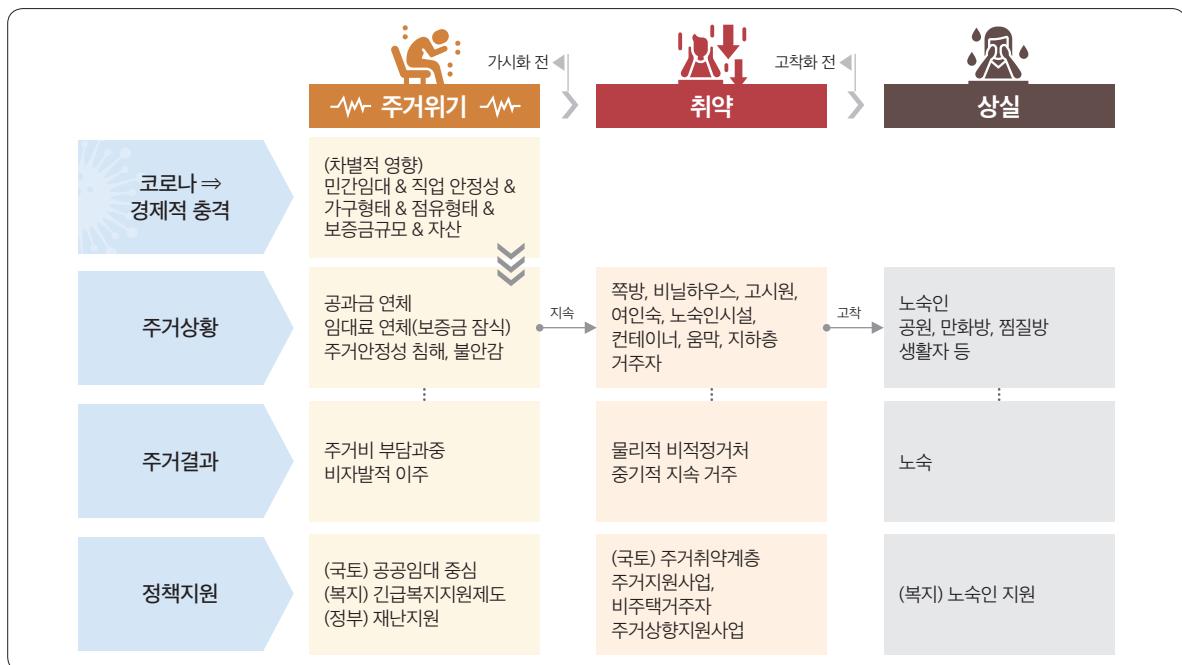
위기는 구성원이 행복, 생존 등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취약은 내·외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를 의미

주거위기는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미비하여 적절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주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의미

주거취약은 비적정거처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상태가 인정된 경우(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주거위기는 주거취약으로 확정되기 전의 위협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주거위기가 가시화되면 주거취약으로 악화되고, 주거취약이 고착되면 주거상실로 전락하는 일련의 흐름을 형성

그림 1 주거위기의 자리매김과 특성



## 2

## 주거위기 발생 경로와 규모

## 주거위기는 직업, 점유형태, 보증금 규모의 중첩된 관계 속에 발생

주거위기 발생 경로에 따라 크게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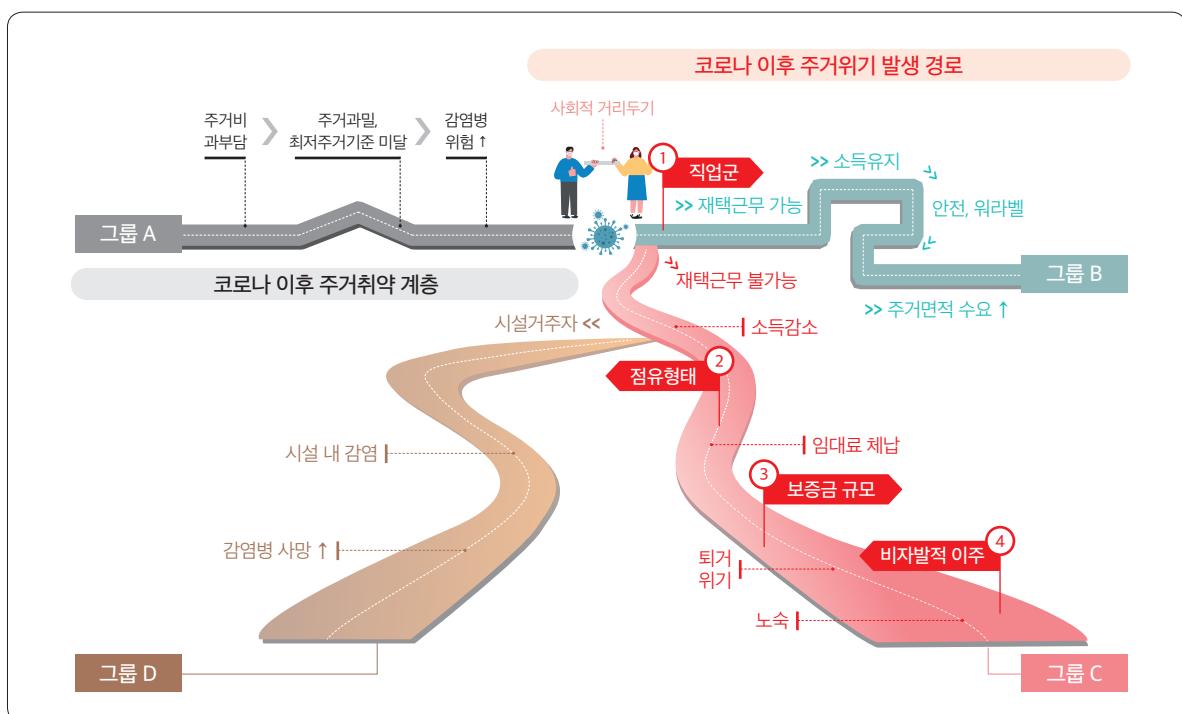
(그룹 A)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주거비 과부담, 기준미달, 주거과밀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계층

(그룹 B)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정적 직업군으로 재택근무를 통해 주거면적 증대수요가 예상되는 시장참여집단

(그룹 C)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불안정적 직업군과 점유형태(월세) 및 보증금 규모(보증금이 없거나 월세의 6배 미만)에 따라 임대료 및 공과금 연체의 위험이 가시화되는 주거위기 직면 집단.  
임대료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퇴거위기에 몰리고 주거를 상실하는 노숙상태 전락의 위험 직면 가능

(그룹 D) 원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시설거주자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므로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정책 확대가 필요한 집단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주거위기 발생 경로



## 주거위기기구 규모 추계

직업 & 점유형태 & 보증금 규모 & 가구형태를 고려했을 때 잠재적 주거위기기구는 최소 25.9만~최대 51.2만

- 가구형태 중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정보, 둘봄, 직업 등에서 취약하고 더 이른 나이에 불안정 직업군으로 이동하므로 그룹 C에 해당(위기기구 총 51.2만 가구 중 1인가구는 25.9만 가구)

전기, 수도, 가스 등 기초생활서비스가 중단된 잠재적 주거위기기구는 최소 29.0만~최대 40.6만

-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사결과 의료, 고용, 건강, 유tility 등 34개 항목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기구는 전체 40.6만 가구이며 그중 전기, 수도, 가스 등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위기기구는 29.0만 가구

## 3

## 주거위기 대응정책과 서비스 연계

### 주거위기가구 긴급대응

(긴급주거지원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공공부문의 자원과 조직을 활용한 방식으로 선정된 공적 지원체계 내의 대상자는 안정성이 높으나,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노출된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월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임대료 납부 유예, 임대료 감면, 임시거처 제공,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서 추가적인 사회서비스와 교육훈련 등 자활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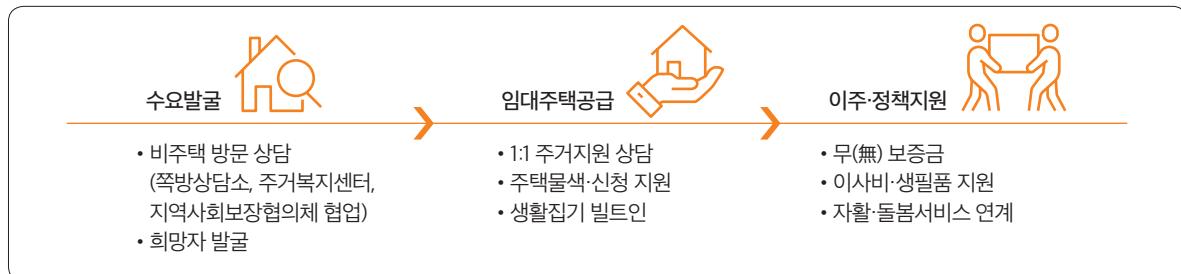
(긴급복지사업 내 주거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주거상실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한 주거위기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대상자가 제한적

- 위기ガ구 사유: 주소득자 사망, 가출(2006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경·공매금 주거상실 위기에 처한 경우(2010년), 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및 퇴거(2014년), 거주주택 붕괴위험(2015년) 등

### 위기로부터의 탈출·회복 지원과 서비스 연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주거상담에서 임대주택 입주 및 밀착 지원서비스가 연계되고 비용과 자활서비스 등이 추가된 토탈서비스 패키지

그림 3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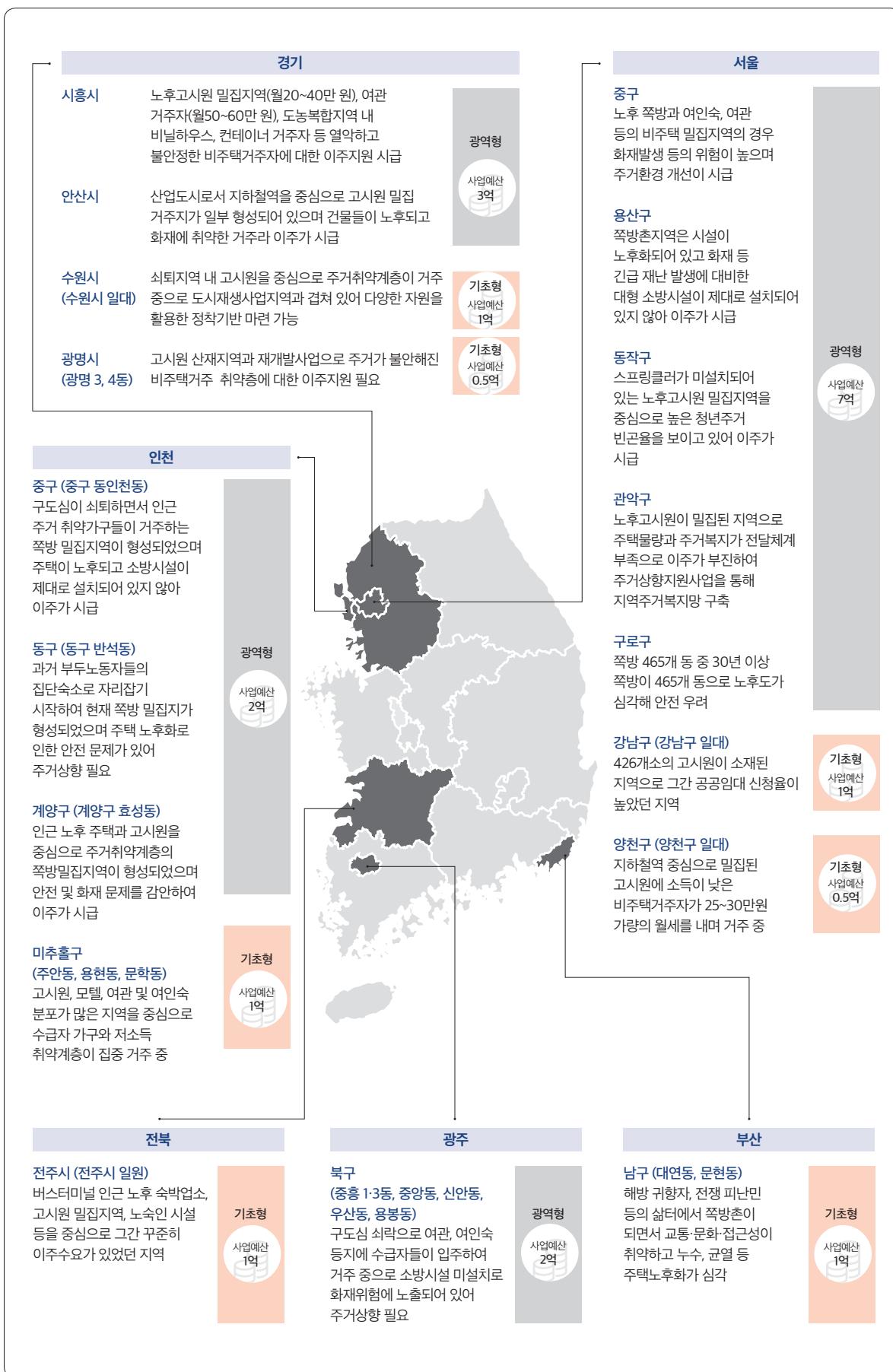
(긴급임시주택) 긴급한 주거위기나 상실의 상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주거를 먼저 지원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긴급임시주택은 주거상실 위기 경험자나 주거상실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 거처 확보 전 단계로 긴급하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집중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가 결합되어 장기적으로 주거상향을 유도
- 지역 내 주거위기가구 상담 및 지원을 수행하던 민간 중심으로 운영이 시작되었고, LH 장기미임대주택을 무상 공급받아 긴급임시거처로 활용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며 전국적으로 100호 미만의 긴급임시주택이 운영 중
- 서울 마포구와 같이 자체적인 재원과 방식으로 긴급임시주택을 마련하고 직접 운영하는 적극적인 사례도 존재

(주거복지센터의 연계) 주거위기가구의 다차원적 어려움으로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상담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주거욕구에 대한 상담, 제도 및 서비스 연계,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발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연계의 구심점
- 읍면동 복지협의체, 지역의 사회복지관, 유관 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간과 공공복지자원의 연계,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의 유관 사업 또는 지자체 복지사업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

그림 4 지역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선정배경 및 사업내용(2020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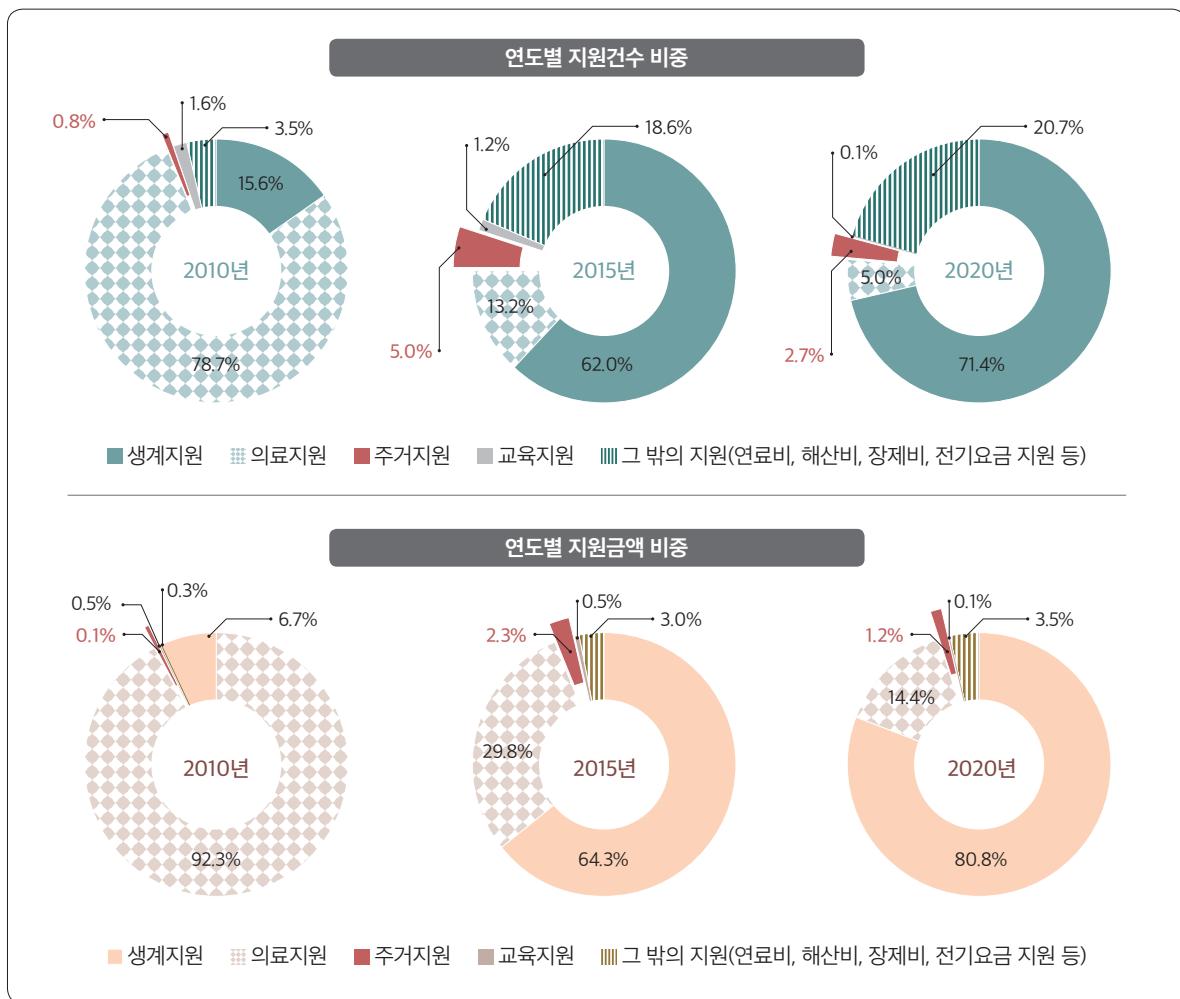
## 주거위기기구 지원실적 및 특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지속 확대(2020년 기준 5,502호)되고 있는 중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은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지원이 미미하여, 가구당 지원액이 평균 20.9만 원에 불과

- 2020년 기준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은 총 2.3만 건, 48.2억 원(건당 평균 20.9만 원)을 지원
- 주거지원은 총 지원건수의 2.7%, 총 지원금액의 1.2%에 불과

**그림 5**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도별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비중



주거복지센터의 위기가구 상담과 지원실적이 높아지고 있으나 위기 특성의 비정형성과 일시성, 제도의 제한성과 경직성으로 지원이 불충분

- 최근 3개 년간(2019~2021) 서울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상담실적과 대상인원이 급증

**표 1** 서울 주거복지센터 최근 3개년 주거복지 상담실적

구분	상담실적 (건)	대상인원 (명)	상담내용(건)					
			계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공공부조	주택금융	기타
2019	52,531	24,403	52,531	9,208	32,326	1,057	806	9,134
2020	74,900	29,573	74,900	13,059	40,963	1,820	2,423	16,635
2021	118,211	47,554	118,211	18,313	64,581	2,626	3,104	29,587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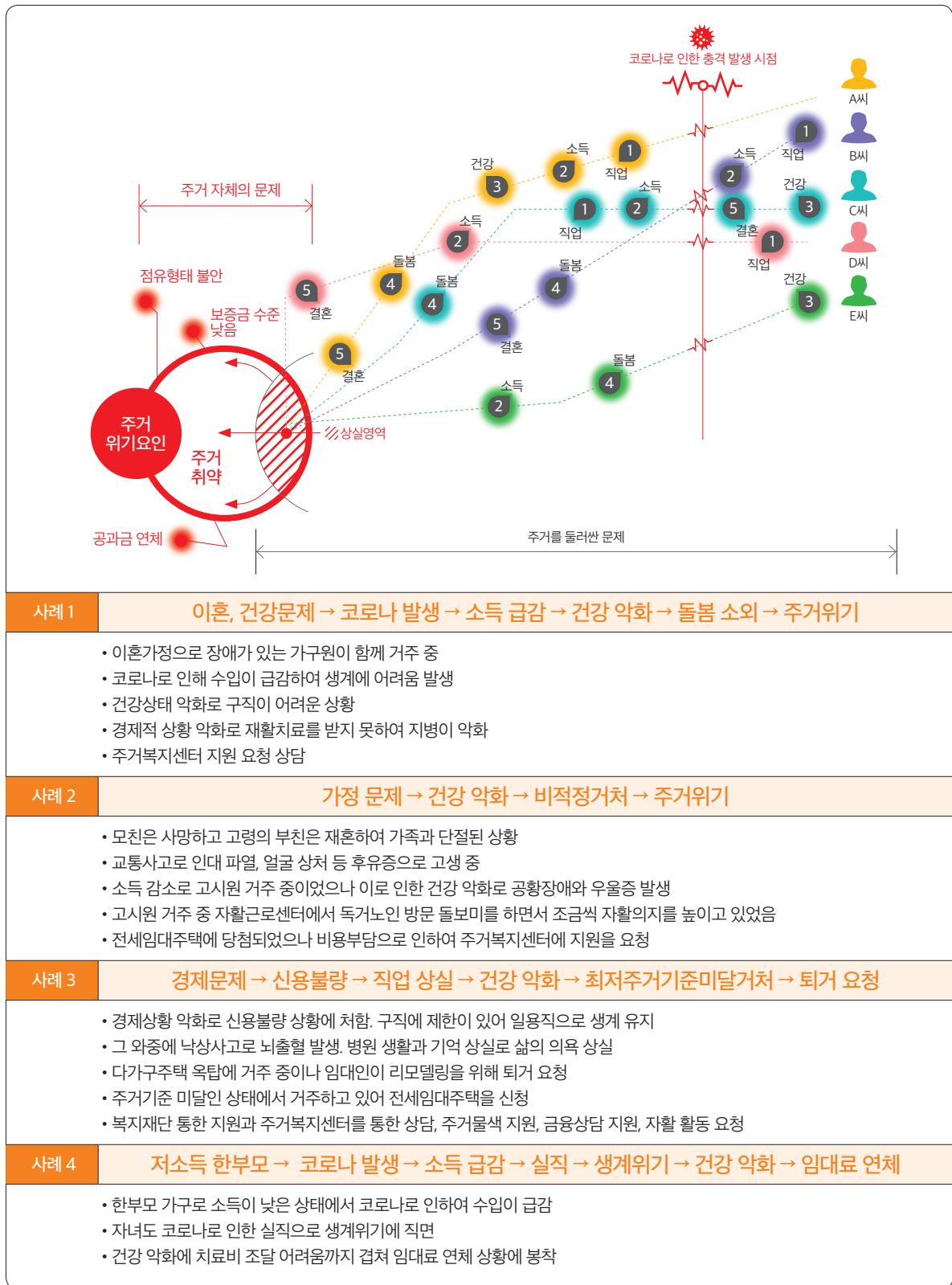
## 주거위기가구 발생과정 및 지원정책의 시사점

'위기의 끝판왕'인 주거위기가구는 위기 발생과정이 비정형적이고,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영향

- 주거위기는 결혼, 건강, 돌봄, 직업, 소득, 자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거주지의 상실로 귀결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임시주택(하드웨어)과 상담서비스(소프트웨어)의 연계가 중요

**그림 6** 주거위기 진입 경로와 발생특성 개념도



## 4

## 해외 주거위기 대응 방식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 긴급지원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임차인과 자가소유자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

-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 이연, 퇴거 금지, 임대료 지원, 공과금 납부 이연 또는 지원, 임대차계약 자동 연장 또는 갱신조치 시행, 임대료 동결 등 지원
- 자가소유자의 경우 모기지 납부 이연, 재산세 납부 이연이나 경감 등을 지원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4개국에서 주택수당을 추가 지원하거나 신설하여 주거지원 강화

-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미국은 약 30조 원 가까운 자금을 임차가구 임대료로 긴급지원

표 2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별 주거비 지원제도 신설 또는 변경 내역

국가	조치	구분	정부 단위	수혜 대상	비용 종류
호주	코로나 주거 지원	신설	지역/주	가구	임대료
	주거비 완화 지원	신설	지역/주	임대인	임대료
칠레	긴급주거비 지원	변경	연방	임대인	임대료
	과밀가구 특별 지원	변경	연방	-	-
체코	코로나 대응 특별 긴급지원	변경	-	가구	임대료와 주거비용
프랑스	가장 취약가구 예외적 연대지원금	신설	국가/연방	가구	임대료와 주거비용
이탈리아	임대주택 접근에 대한 국가적 지원자금	변경	지역/주	-	임대료
일본	주거안전급여	변경	국가/연방	임대인	임대료
노르웨이	국가주거급여	변경	국가/연방	가구	임대료와 주거비용
폴란드	임대료 보조	신설	공동(중앙, 지방 매칭)	가구	임대료와 주거비용
포르투갈	코로나 지원	신설	국가/연방	가구	임대료
스페인	자동 임대료 갱신	변경	공동(중앙, 지방 매칭)	가구	임대료
스웨덴	유자녀가구 주거급여	변경	국가/연방	가구	임대료와 주거비용
터키	임대수당	변경	국가/연방	가구	임대료
미국	커뮤니티개발 포괄보조금	변경	공동(중앙, 지방 매칭)	가구(지방정부를 통해 지급)	임대료
	긴급임대료 지원	신설			

출처: OECD 2021a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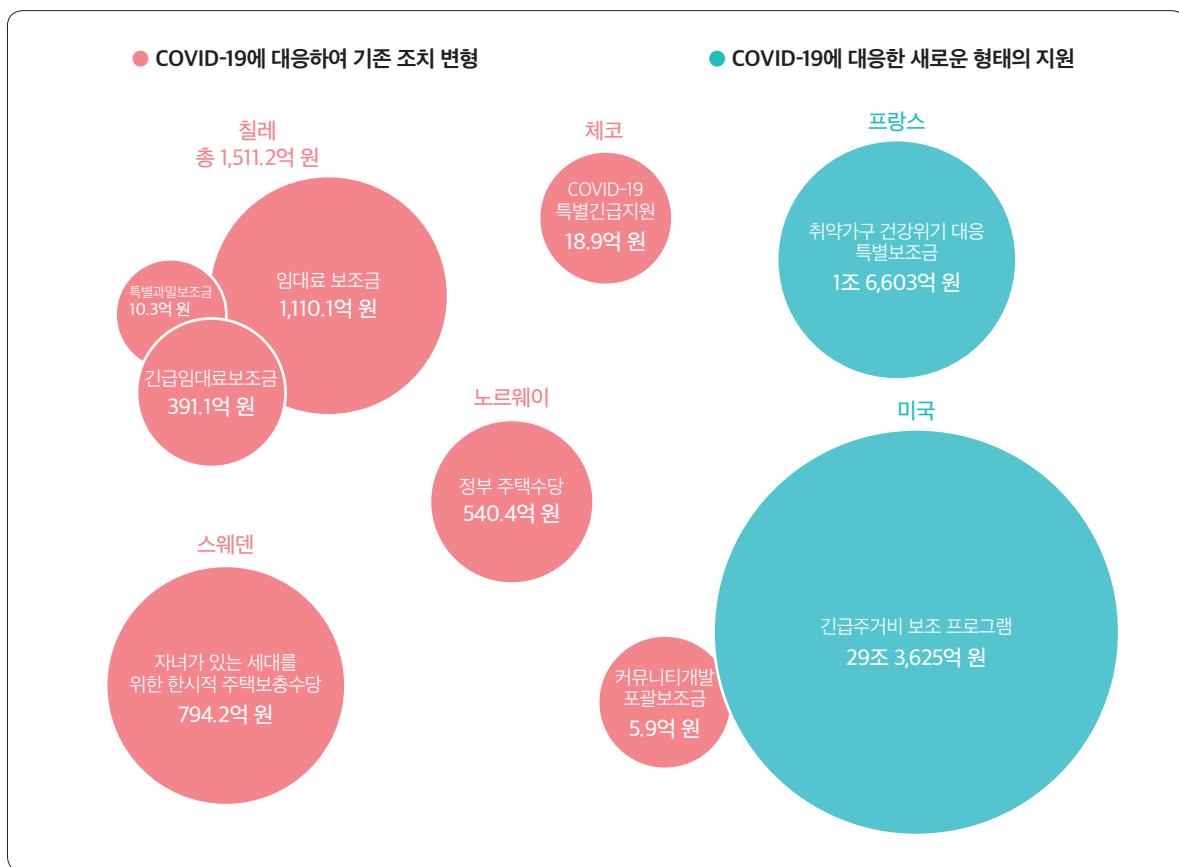
## 퇴거위기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조치 시행

- 영국은 팬데믹에 따른 주거안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법을 제정.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퇴거 방지를 명시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를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강화하여 임차인 보호조치 시행

미국 통계청 가구조사, 미국 도시연구소 코로나 영향 추적조사, 네덜란드 주거위기 가구 실태조사 등 주거위기 가구 긴급실태조사 실시

- 미국 통계청 코로나 영향 가구조사(Pulse Survey): 주거, 고용, 식품안전, 건강, 교육, 지출, 교통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 파악을 목적으로 문자, 이메일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데이터 수집; 각종 수당과 긴급지원금 사용의 효과에 대한 정책영향도 파악 ⇒ 임대료/모기지 지불여부, 연체 가능성, 연체여부, 퇴거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
- 미국 도시연구소 코로나 영향 추적조사: 점유형태, 공적지원, 임대료/모기지 연체여부, 연체가능성, 연체금액, 퇴거 위협, 퇴거통지서 수령여부 등 주거위기 징후 및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그림 7 코로나19 대응 국가별 주거비 지원 재정투입 규모



주: 1달러는 1,200원으로 환산

자료: OECD 2021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을 통해 부담가능주택을 전폭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 4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

- 주거비 과부담, 생애최초 주택구입 어려움 등에 주목하여 부담가능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전통적 용도지역지구제의 완화 및 건설장벽 제거, 자금지원 예정
- 200만 호 이상의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에너지 효율적 주택공급과 보존, 개조지원에 역점

유럽연합 주요국은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표명하고, 사회주택 에너지 효율화와 투자 확대 및 그린뉴딜과의 연계성을 증대할 방침

- (영국) 사회주택을 위한 뉴딜정책을 통해 사회주택 디자인과 품질 향상, 사회적 낙인 방지 등 노력
- (프랑스) 사회주택 부문 투자 확대(5억 유로, 2021~2022년)를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예정
- (이탈리아) 안전한, 녹색 사회주택 프로그램에 20억 유로를 투자하여 에너지 효율적 임대주택 확보, 사회주택 및 학생주택 건설 촉진 예정
- (스페인) 국가주택계획을 통해 공공주택 건설 촉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 발표

네덜란드는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 억제 및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초년생과 중위소득가구의 민간임대차 시장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시행

- 2021년 사회주택 거주자 전체의 임대료 인상률을 0%로 동결하여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가구당 주거비 지출 절약 임대료 동결로 인한 주택협회 손실이 추가적인 신규 주택건설 위축,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극복방안 마련 예정

### 주거위기가구 탈출·회복지원과 서비스 강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는 주거우선정책(Housing First)을 통한 긴급주택 공급

- 사회로 복귀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기존의 주거준비(housing ready) 방식이 갖는 계단식 구조는 진행과정에서 탈락하는 이들을 양산하면서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주거 우선으로 무게중심 변경
- 노숙인, 주거상실가구의 준비 상태와 무관하게 주거를 우선 지원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을 돋는 방식
- 캐나다는 긴급주택 입주촉진전략을 발표하여 코로나 영향가구, 취약가구에게 저렴한 주택을 우선 지원

주거상담을 통한 임차가구 정보제공 및 위기 하락을 방지하고 주거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주택압류가 급증하면서 주택구매 전 조언과 주택압류 예방을 위해 자가주택 소유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활발. 코로나 이후 임대료 연체와 퇴거위기가구가 급증하면서 의회의 자금지원을 받아 임차인 상담 확대
- 일자리계획 중 주거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 확대(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 개선과 돌봄경제(Care Economy)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해외 주거위기가구 대응정책 시사점

사회주택 투자 확대를 통한 상시적 안전망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일조

정부가 긴급위기상황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거비지원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여 퇴거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

위기가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의 다양성과 적극성 및 조사자료를 활용한 사회적 불평등 연구결과 확산으로 사회적 환기

민간임차가구 등 소득 감소에 따른 퇴거위기에 가장 취약한 대상을 위하여 임대료 동결, 임대차계약 자동 연장, 퇴거 동결, 기초생활서비스 중단 금지 등 사회적 최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실행

상담서비스 등 위기가구 탈출 및 회복을 위한 전략을 함께 구사

## 5

### 주거위기가구 안전망 강화 방안

#### 중층의 안전망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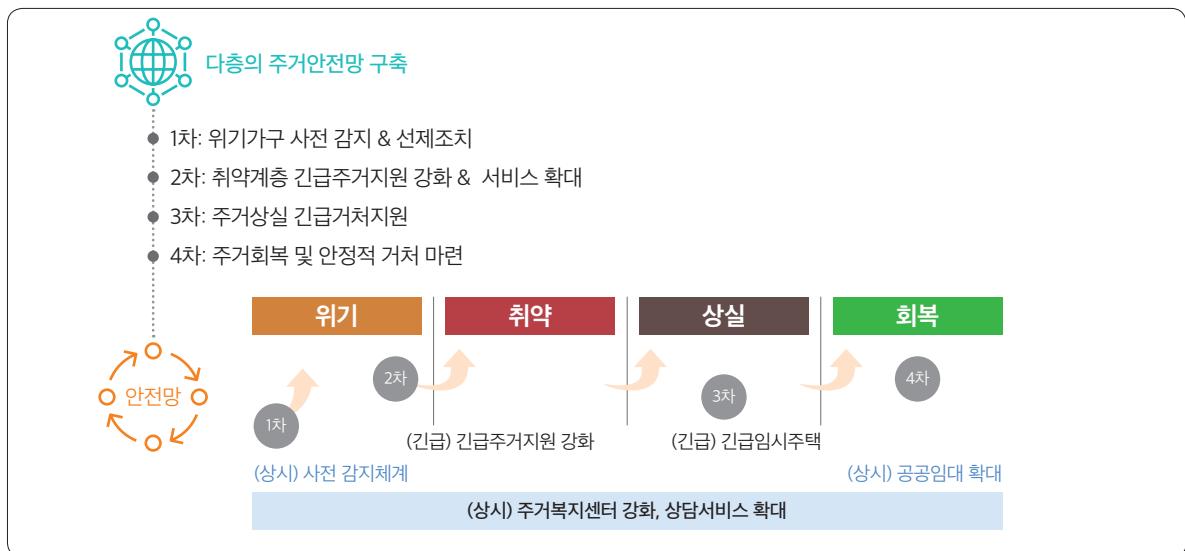
노동시장 유연성이 증대되고,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불안계급으로 인해 주거부문에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계층이 지속 확대

- 스텝딩(G. Standing)의 불안계급 논의, 영국에서 시작된 평생임차세대(Generation Rent)는 이런 위기의 확대와 상시화 시대에 주거부문 위험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
- 일본에서도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일본의 주거체계가 상당히 취약함을 지적하며 자가세대가 임대세대로 전환되고 주거사다리가 작동하지 않음을 비판. 소득불안정성이 주택부문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되고 지속되는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
- 일본의 주거 세이프티넷은 지원대상을 주택이 필요한 대상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신자유주의 연장선상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제한적으로 정의했다고 평가

신자유주의적 주거정책으로는 불안계층에 대한 예방적이고 사전적인 지원에 제약이 있으므로, 사전에 위기 탐지, 취약성 집중지원, 탈출과 회복지원, 서비스 연계전략 필요

- 미국에서도 주거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이를 위해 긴급바우처 제공, 응급자금의 유연한 활용, 저소득 임차가구가 임대료·공과금 연체 시 상담을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주장

**그림 8** 다층적 주거안전망 구조 개념도



###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체계 강화

주거위기가구 정책대상으로 추정한 규모에 비해 수혜실적은 약 13~2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위기기구는 25.9만~51.2만 가구로 추산되나, 수혜기구는 7만 가구 정도 수준
- 주거취약가구 지원 0.6만, 비주택상향 0.5만, 주거복지센터 긴급지원 0.9만, 주거복지센터 상담인원 4.8만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300~800억 원 수준의 지원을 통해 위기기구 보호 필요

- 주거복지센터 운영비용 53억 원, 비주택상향사업 20억 원 등의 자금이 투입되어 13~26%의 위기기구를 커버했다고 하면, 위기기구 전체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약 300~600억 원 정도의 예산 투입이 예상
-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인한 위기기구는 29.0~40.6만 가구로 추산되었으나, 긴급복지지원 중 주거지원은 총 2.3만 건, 총 48.2억 원이 지출. 이는 위기기구의 6~8%가 지원받은 것이므로 전체 위기기구지원에는 600~8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긴급지원의 대상자 유연성 확대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대상자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

- 현재 주거위기가구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주택손실, 주거상실 위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임대료 연체의 경우도 추가하여 주거상실 직전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사전에 위기를 파악한 대상자의 주거기준이 전세 1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과 월세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 해당 기준 초과자의 주거위기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주거비부담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 필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만을 정보 연계로 파악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 관리비 연체상황을 구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안

주거위기 위험가구에 대한 임대료 연체 여부와 금액,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및 설문체계 마련 필요

## 주거취약계층 상시 안전망 강화 및 주거회복과 서비스 연계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성 강화와 주체의 다양화 필요

- 다양한 지역과 주체의 주거복지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방식의 다양화와 공급 주체의 다양화 노력 요구

정부부처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 감지체계 강화

주거정책을 전달하는 최일선에 위치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중요성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미흡한 여건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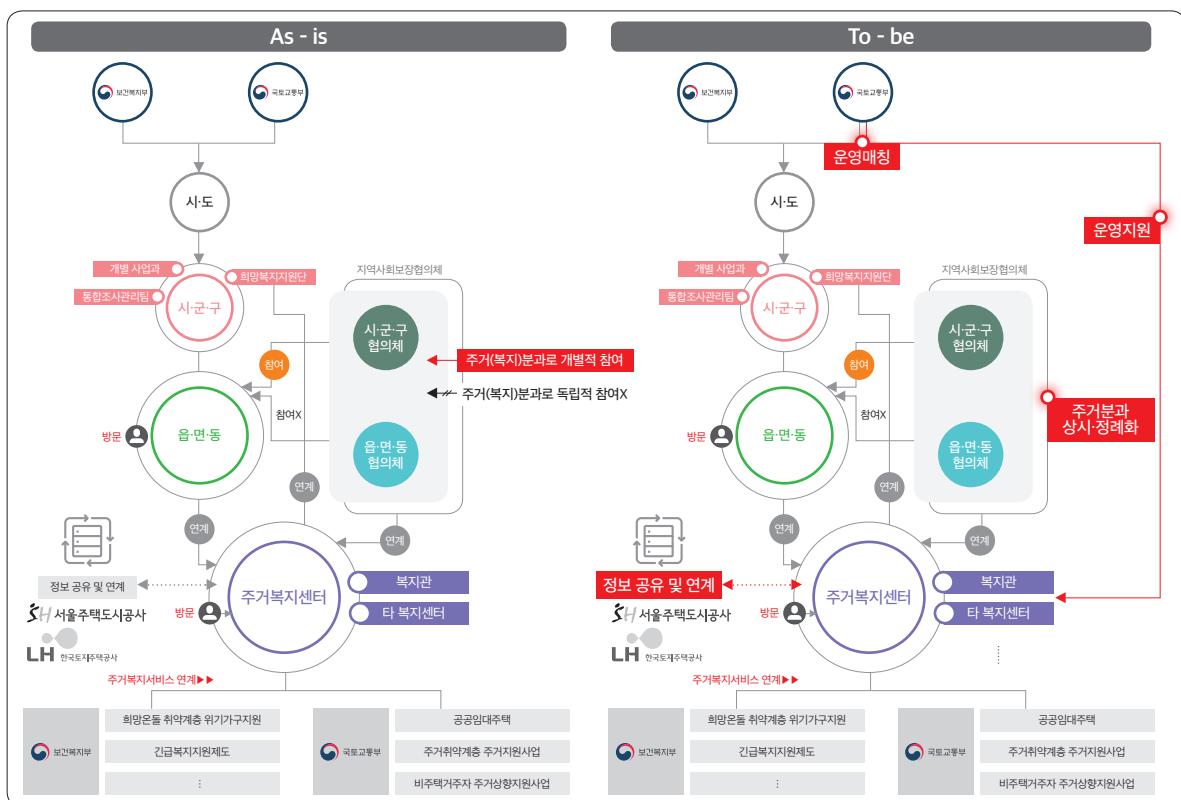
- 미국도 임차인 임대료 미납과 연체에 대응하여 카운슬링 서비스 제공에 재원투입 확대

- 항목별 예산 이외에 긴급한 상황에 따라 사용처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재량자금(포괄보조금) 마련 필요

주거복지센터 안정화와 역할 강화 및 긴급임시주택 확대

- 주거복지센터와 같이 취약·위기 주민과 대면하는 서비스 전달기관의 자리매김을 강화하고, 설립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지자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연계·협업이 필요

**그림 9** 주거복지센터 자리매김 강화



### 참고문헌

OECD. 2021a. Key Characteristics of Housing Allowances. <https://www.oecd.org/els/family/PH3-2-Key-characteristics-of-housing-allowances.pdf> (2022년 6월 22일 검색).

\_\_\_\_\_. 2021b. Public Spending on Housing Allowances. <https://www.oecd.org/els/family/PH3-1-Public-spending-on-housing-allowances.pdf> (2022년 6월 22일 검색).

\* 이 브리프는 '박미선, 조정희, 허소영 외. 20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세종: 국토연구원'을 요약 정리하였음.

•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mspark@krihs.re.kr, 044-960-0294)

• 조정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  
(jhcho@krihs.re.kr, 044-960-0569)

• 허소영 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